[별표2] 신속확인 심의 세부기준

심의항목		세부기준	검토자료
1. 신기술 및 융·복합 제품 해당 여부		o 신기술 및 용·복합 정보보호제품* 해당 여부 - 평가기준 부재로 기존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제도 에서 평가 불가능한 신기술 및 융·복합제품 * (예시) AI기반,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구현한 제품 O 제품의 형태, 정보보호 기능 제품 해당여부 - 모듈, 기능 등의 형태가 아닌 완제품의 형태여야하며, 주요기능이 정보보호 기능인 제품	기능설명서
2. 제품의 기능		o 기능설명서에 작성한 모든 기능의 정상 구현 여부 o 구현된 기능의 정상 동작 및 정확한 결과 제공 여부	기능설명서, 기능 시험 확인서 (GS인증서)
3. 제품의 안전성	3.1 취약점 분석·평가	o 유효한 취약점 분석·평가 결과서 제출 여부 -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을 통해 발급받은 자료 여부 -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 여부 o 제품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, 발견된 취약점을 적절히 조치하였는지 여부	분석·평가
	3.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	 o 유효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확인서 제출 여부 -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 소속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 발급받은자료 여부 -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자료 여부 o 최초진단 시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점검까지 수행하였는지 여부 	SW보안약점 진단 결과
	3.3 개발 및 생산방식	o 제품의 개발 방식이 독자적이거나, 공동·위탁 개 발한 경우 업체와의 계약, 개발 프로세스, 운영조 직 등의 적절성 여부 o 제품의 생산 방식이 자체적이거나, 위탁 생산한 경우 업체와의 계약, 생산 프로세스, 운영조직 등의 적절성 여부	신청서,
4. 제품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		o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장애대웅 등 유지보수 체계, 방법, 절차의 적절성 여부 o 제품에 대한 신규 취약점 점검 및 발견 시 조치 방안의 적절성 여부	기능설명서